

|       |                      |      |
|-------|----------------------|------|
| 의안번호  | 제 66 호               | 의결사항 |
| 의결년월일 | 1996. 11. .<br>(제 회) |      |

##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       |               |
|-------|---------------|
| 제출자   | 사천시장          |
| 제출년월일 | 1996. 11. ㄴ . |

##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    |    |
|----|----|
| 의안 |    |
| 번호 | 66 |

제출일자 : 1996. 11. 26.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 2. 주요골자

- 재해대책본부는 통제관(건설도시국장), 담당관(건설과장), 실무반으로 구성(안 제2조)
- 실무반은 사천시·사천경찰서·육군 제8265부대, 육군 8962부대 4대대, 공군5718부대·경상남도 사천교육청·마산지방해운항만청 삼천포출장소·사천소방서·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소속한 과장급이상 공무원 (안 제3조)
-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6. 15 ~ 10. 15)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해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6조)

##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이하“재해대책본부”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②통제관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담당관은 건설과장이 되며, 실무반은 시 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제3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된 과장급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대위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감급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사천시
2. 사천경찰서
3. 육군제8265부대, 육군 제8962부대4대대, 공군5718부대
4. 경상남도사천교육청
5. 마산지방해운항만청삼천포출장소
6. 사천소방서
7. 기타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시 재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재해기간 파견근무)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매년 6. 15 ~ 10. 15)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1조 제5항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은 폐지한다.